

外國 職務發明制度 및 國有特許處理規程 抄

〈Ⅳ〉

日 本 國

國有特許權實施契約書

甲과 乙은 다음 條項에 따라 特許權實施를 約定한다.

第1條 甲은 다음 發明特許의 實施를 乙에 許諾한다.
特許番號: ○○○, 發明의 名稱: ○○○

第2條 이 契約의 實施權範圍는 다음과 같다.
期 間: ○○年, 內 容: ○○○○○

第3條 甲은 이 發明特許의 實施를 乙 以外의 者에게 도 許諾할 수가 있다.

第4條 乙은 이 契約를 締結한 뒤에는 자기의 費用으로서 實施權의 登錄節次를 取할 수가 있다.

第5條 乙은 甲에 대하여 實施料로서 實施期間 중 다음 基準에 따라 支拂한다. 販賣金額의 ○○% (또는 利益金額의 ○○%, 生産數量當 ○○원, 販賣數量當 ○○원, 使用件數當 ○○원)

위의 實施料는 經濟事情, 其他의 顯著한 變化가 생겼을 경우에는 甲, 乙이 合意하여 이를 變更하고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契約를 解約할 수가 있다.

이 發明의 特許權이 無効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미 支拂된 實施料는 返還하지 않는다.

이 發明의 特許權의 無効審判이 있을 경우나 前項의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通知해야 한다.

第6條 前條의 實施料는 ○기로 나누어 甲의 通告에 따라 支拂한다.

第7條 乙은 甲에 대하여 1年을 ○期間으로 나누어 該當期의 發明特許의 實施에 따른 製品의 生産數量, 販賣數量, 販賣額, 利益金額을 2期의 終了後 ○○日以內에 報告해야 한다.

第8條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라 實施權의 移轉 其他의 變更이 생길 경우에는 乙이나 그 承繼人은 遲滯 말고 甲에게 届出해야 한다.

前項의 경우를 除外하고 乙은 實施事業의 主體를 變更하는 등의 法律上 또는 事實上의 行爲를 해서는 안된다.

第9條 乙은 그 發明 特許의 實施에 따른 製品에 그 特許의 表示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第10條 甲은 隨時로 필요에 따라 乙로부터 이 發明特許의 實施狀況과 其他의 實施에 필요한 事項에 대해서 報告를 받고 또한 職員을 派遣하여 實施에 관한 帳簿 書類와 其他의 物件을 調査할 수가 있다.

第11條 特許權이 侵害되었을 때는 甲은 乙의 申請에 따라 遲滯없이 그 排除手段을 講究한다.

第12條 다음 條項의 1에 該當할 때는 甲이나 乙은 解約을 提議할 수가 있다. 이 경우에는 이 契約를 解約 提議後 ○○月을 經過하면 終了한다.

1. 이 契約 第2條 第5條 및 第11條에 違反했을 때
2. 이 發明特許의 實施에 있어 虛偽의 報告나 그 外의 不法行爲가 있을 때
3. 이 發明特許의 實施成績이 妥當치 않을 때 또는 正當한 理由없이 實施하지 않을 때

이 契約의 滯結이 虛偽의 表示 또는 그 外의 事實에 反하는 報告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한쪽에서 探知했을 때는 即時 이 契約를 解約할 수가 있다. 前項의 경우 當事者의 한쪽에 故意 또는 過失이 있을 때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가 있다.

第13條 第2條에 定한 이 契約의 期間이 滿了했을 때 또는 第5條 第2項에 따라 契約를 解除했을 때는 이 特許에 關聯된 生産物로서 實施料가 未納된 것을 乙이 所有하거나 占有할 경우는 實施權의 消滅에 關係없이 乙은 그 生産物에 對應하는 實施料를 支拂해야 한다.

前項의 경우에는 支拂債務履行에 필요한 範圍內에서 當事者는 더욱 이 契約에 定하는 權利를 保有하며 義務를 진다.

第14條 前條에 規定하는 債務履行方法과 그 外의 詳細한 契約에 대하여는 附屬書에서 이를 定한다.

附屬書는 經濟事情이나 그 外에 顯著한 變化가 發生했을 경우는 甲·乙이 合意하여 이를 變更할 수가 있다. 萬若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從前의 附屬書대로 繼續한다.